◉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5호

「전파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2011.02.18.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12호

개정 2011.03.12.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2- 7호

개정 2013.06.28.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3- 6호

개정 2014.12.23.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23호

개정 2015.11.12.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3-22호

개정 2016.08.29.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17호

다른 고시개정 2016.09.30.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21호

다른 고시개정 2016.11.30.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125호

개정 2017.08.04.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 7호

일괄개정 2017.08.28.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 8호

다른 고시개정 2017.09.01.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10호

다른 고시개정 2017.12.05.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14호

다른 고시개정 2017.12.28.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19호

다른 고시개정 2018.07.02.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8- 8호

다른 고시개정 2018.07.31.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8-13호

다른 고시개정 2018.07.02.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8- 8호

다른 고시개정 2018.08.17.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8-17호

다른 고시개정 2018.12.24.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8-29호

개정 2019.03.11.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 5호

다른 고시개정 2019.08.27.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14호

개정 2019.12.04.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19호

다른 고시개정 2019.12.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95호

다른 고시개정 2020.9.25.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0- 6호
다른 고시개정 2020.1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59호
다른 고시개정 2021.10.12.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16호
다른 고시개정 2021.11.17.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20호
개정 2021.11.22.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19호
개정 2022.5.2.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 8호
다른 고시개정 2022.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0호
개정 2023.3.6.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 4호
다른 고시개정 2023.06.30.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13호
개정 2023.8.16.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1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말한다.
2. “시험기관”이라 함은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라 함은 법 제58조의5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도록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4. “비교숙련도 시험”이라 함은 참여기관의 시험능력을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상호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심사기구”라 함은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 제77조의10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구를 말한다.
6. “시험분야”라 함은 영 제77조의9의 구분에 따라 원장이 지정하는 적합성평가 시험분야를 말한다.
7. “시험항목”이라 함은 이 고시 별표 1에 따라 시험분야별 세

부 기술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시험항목을 말한다.

8. “표본검사”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적합등록을 한 기자재 중 표본을 선정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여부를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심사원"이라 함은 이 고시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심사 및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 또는 원장이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또는 ISO/IEC 17000, ISO/IEC 17011, ISO/IEC 17025, ISO/IEC 17043 및 관련 국제표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험분야) ① 영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 신청 가능한 시험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 분야
2. 무선 분야
3. 전자파적합성 분야
4. 전자파 강도 분야
5. 전자파흡수율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58조의8에 따라 체결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내용에 따라 해당 국가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서 유예 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신규 인증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항목으로 향후 시험설비 확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2. 적합성평가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요가 적고, 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시험항목으로 신청인이 시험설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제2장 시험기관의 지정

제4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8조의5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3.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4.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5. 사업계획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정요건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합성 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 이상(시험분야의 수가 복수인 경우 각 해당 시험분야별로 서로 다른 시험원이 최소 2명은 되어야함): 해당 시험 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2. 품질책임자 : ISO/IEC 17025 교육을 이수한 자
3. 기술책임자 : 방송통신 시험분야(유·무선 분야는 해당 시험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4. 시험장에 대한 전파환경 등 관계법령 또는 국제표준으로 정한 요건과 해당 분야 시험에 필요한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항

②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방침
2. 시험기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험원의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험업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시험성적서의 서식 및 그 발행에 관한 사항
6. 시험업무 관련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측정설비의 성능유지에 관한 사항
8. 시험항목별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험 및 지정시험기관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계획
2. 법인의 재무구조(자금조달 계획,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 현황

제6조(시험기관의 심사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2. 제8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기술적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가 완료된 경우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심사 시작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계획을 통보받은 시험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정 또는

심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요청사항이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제2조제9호에 따른 심사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⑦ 원장은 심사종료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심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관련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 적용
2.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공무원 5급 기준) 적용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와 시장환경 및 정책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시험장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3. 지정일
4. 지정번호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6자리의 식별부호를 부여하되 앞의 2자리는 “KR"로 표시하고 뒤의 4자리는 지정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3장 지정시험기관의 변경 등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확보 현황 1부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지정서 원본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기관대표주소
3. 대표자
4. 시험장주소
5.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시험원
6.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
7. 품질관리규정

④ 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

를 포함한다)를 변경하여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삭 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① 법 제58조의5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시험업무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받은 시험업무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6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최근 5년간 발행한 적합등록 시험성적서(전자문서화하여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등록 시험성적서는 지속적 보존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폐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업무를 중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시험기관의 양수·합병 승인신청 등) ① 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양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2. 지정서 원본 1부
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병승인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지정서 원본 1부
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 또는 합병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시험장 환경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지정시험기관의 정기검사 등) ①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이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에 출입하여 영 제77조의11제1항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검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현황
2. 품질관리규정의 국제표준(ISO/IEC17025) 요건 적합성 및 이

행 여부

3. 시험환경 및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적합성 유지 여부

4. 비교숙련도 시험 참여 실적 및 시정조치 결과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7일전까지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심사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검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심사원 또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지명령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시험기관의 명칭과 처분내용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3조(시험성적서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전자문서로 된 성적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도 1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적용하되, 시험성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대형, 정밀기자재로서 이동 및 설치가 곤란하고 주변기자재 구성 등 시험기관에 반입하여 시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국내 및 국제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신청 기자재명
2. 시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3.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시험을 행한 장소가 다를 경우는 그 소재지)
4.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및 페이지 일련번호
5. 시험신청기자재에 대한 개요 및 형식명 또는 모델명·모델번호, 기자재일련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시험신청기자재 접수일, 시험기간 및 시험성적서 발행일
7. 사용한 시험방법(품질관리규정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

8. 시험결과(필요시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첨부)

9. 시험결과에 대한 담당시험원의 의견

10. 시험업무 수행 중 회로 및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적합성평가 기준에 만족하게 된 경우 보완 전후의 모습, 부위, 재질, 사유, 보완전의 부적합 사항 등의 보완내용

11. 지정시험기관의 장, 기술책임자 및 담당시험원의 직위·서명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 시험 처리기간 및 시험항목별 시험수수료(산출내역 포함)를 정하여 품질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적합성평가 시험 처리기간 및 시험항목별 시험수수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성적서 위조·변조 사고 예방을 위해 홀로그램 또는 전자적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관리) ①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설비는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시험소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ILAC MRA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가입/포함된 인정기구에서 인정된 교정기관 또는 국제도량형위원회간 상호인정협정(CIPM MRA : International Committee of Weights and Measures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가입/포함된 국가측정표준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② 적합성평가시험에 사용되는 설비에 대하여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성능검사

기준 및 방법은 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직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① 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직원의 품질관리 능력과 시험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 및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및 시험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 및 심사원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와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품질관리규정)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ISO/IEC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에 따라 품질관리 규정을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지침서 등으로 문서화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관계법령 및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시험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른 유효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보관) ① 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시험신청서류(기기의 동작을 위해 신청자가 시험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2. 시험성적서(시험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자료는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어야 하며 열람, 복사, 반출 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원장이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위해 지정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 시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보완내용은 시험성적서 발급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표본검사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7 및 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에 합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매년 10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표본검사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시험성적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표본검사 비율은 제1항에 의한 대상기자재의 100분의 3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표본검사 비율을 적용한 결과 1건 미만인 경우에는 1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표본검사 대상기자재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평가 시험시 회로 및 구조를 보완 또는 변경한 기자재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기자재 등

⑤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선정된 표본에 대하여 회로 및 구조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적합성평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표본검사 결과 회로 및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시험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표본검사용 표본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구매하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표본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비교숙련도 시험)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향상시키고 시험기관 또는 시험원이 수행한 시험결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비교숙련도 시험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지정시험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정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시험기관 심사 또는 검사과정에서 시험기관의 이의제기가 있어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원장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시험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이 제·개정됨으로 인해 시험항목이 추가되거나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나 시험절차서 등 측정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2.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 수요가 적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직접 수행하는 시험에 대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23조(처리기간 등) ① 원장은 제22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항공 항행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에 대한 처리기간은 55일,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간은 1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등) ①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① 원장은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인정협정과 ISO/IEC 17011(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의 일반요건)에 따른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ISO/IEC 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12호, 2011. 2.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지정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2-7호, 2011. 3.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3-6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4-23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5-22호, 2015. 11.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6-17호, 2016. 8.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전자파강도) ① 전자파강도 시험분야 시험기관 지정은 2018.01.01.부터 시행한다.

② 전자파 강도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는 2018.08.01.부터 실시한다.

부칙 <제2016-21호, 2016. 9.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호 2. 무선에 26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부칙 <제2016-125호, 2016. 11.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호 2. 무선에 26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3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부칙 <제2017-7호, 2017. 8.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전자파강도) ① 전자파강도 시험분야 시험기관 지정은 2018.01.0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나호 5의 603 시험항목(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

품은 제외)’에 대한 지정은 전자파강도 측정 기준 별표2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전자파 강도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는 2018.08.01.부터 실시한다. 다만, 별표 1의 ‘나호 5의 603 시험항목(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에 대한 시험업무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별표2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8호, 2017. 8.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0호, 2017. 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1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험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264-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264-2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개방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제2017-14호, 2017. 12. 5.>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1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험분야	시험항목
3. 전자파적합성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부칙 <제2017-19호,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생략> 다만, 제22조와 별표 19는 2018년 3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험분야	시험항목
3. 전자파적합성	347 KN 15194(전기자전거)

부칙 <제2018-8호, 2018.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나의 2 중 20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시험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09-1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209-2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209-3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부칙 <제2018-13호, 2018. 7.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도 1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적용하되, 시험성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적합성평가시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25일 ☐ 55일

①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신청 기자재	기자재명 (기기명)			모델명 (형식명)	
	기기부호 (형식기호)			용 도	
제조자	상호(명칭)			제조국	
	주 소				

신청분야	[ ] 유선 [ ] 무선 [ ] 전자파적합성 [ ] 전자파흡수율 [ ] 전자파강도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수수료
제출서류	1. 사용자설명서(방송통신기자재등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될 것) 2. 외관도(제품 전체 외관도) 3.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함. 단, 전자파적합성 시험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제24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직접/온라인)	→	서류검토/신청기자 재확인	→	시험	→	시험성적서 발급
신 청 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험을 신청한 경우 작성

②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③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④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⑤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⑥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부칙 <제2018-17호, 2018. 8.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중 [별표 1] 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험 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65-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265-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기지국) 265-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중계장치)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이동국)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기지국)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중계장치)
3. 전자파적합성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4. 전자파흡수율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5. 전자파강도	604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부칙 <제2018-29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와 별표 9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중 별표 1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험분야	시험항목
3. 전자파적합성	350 KN 62920(태양광 발전시스템용 전력변환기) 351 KN 301 489-51(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

부 칙<제2019-5호, 2019. 3.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전자파적합성분야 중 다음의 방송수신기기류와 정보기기류의 시험항목은 2018.1.1일 삭제한 것으로 본다.

302 KN 13(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306 KN 22(정보기기류)
315 KN 20(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316-1 KN 24(정보기기류)
316-2 KN 24(정보기기류/음압시험 제외)
316-3 KN 24(정보기기류/잡음전력시험 제외)
316-4 KN 24(정보기기류/음압 및 잡음전력 시험 제외)
328-1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328-2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335-1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35-2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336 KN 301 489-26(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기지국, 무선중계기, 보조기기)

부 칙<제2019-14호, 2019. 8. 27.>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나의 2 중 26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시험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67-1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해안국용)
	267-2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선박국용)

부 칙<제2019-19호, 2019. 12.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전자파적합성 분야 중 다음의 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 수 1㎓ 이상의 시험항목은 2018.6.28일 삭제한 것으로 본다.

305 KN 19(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 수 1㎓ 이상)

부칙 <제2019-95호, 2019. 12.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중 [별표 1] 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험 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6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재난경보방송용)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제2020-6호, 2020. 9. 25.>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③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중 [별표 1]의 나호의 1 중 104란, 106란, 109란, 11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제3조 관련)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시험 분야	시험항목
1. 유선	104 꼬임케이블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인터페이스 단말장치 106-1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106-2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최대채널주파수 폭 96㎒ 제외) 109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117 기가급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② 생략

부칙 <제2020-59호, 2020. 10. 16.>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중 [별표 1]의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나호의 4 중 514를 삭제하고, [별표 1]의 나호 4와 5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시험 분야	시험항목
4. 전자파흡수율	514 <삭제> 51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150㎒ ~ 5850㎒ 주파수 대역)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5. 전자파강도	605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부칙<제2021-16호, 2021. 10. 12.>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에 269-1, 269-2, 269-3, 270-1, 270-2, 270-3, 348-3, 349-5, 349-6, 522, 60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제3조 관련)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시험 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69-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269-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기지국) 269-3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중계장치) 270-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이동국) 270-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기지국) 270-3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중계장치)
3. 전자파적합성	348-3 KN 301 489-50(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49-5 KN 301 489-52(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단말기, 보조기기) 349-6 KN 301 489-52(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 제외)
4. 전자파흡수율	52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5. 전자파강도	606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③ <생략>

부칙<제2021-20호, 2021. 11. 17.>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중 [별표 1] 의 나호에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시험 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71 자율해상무선기기

부 칙<제2021-19호, 2021.11.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2-8호, 2022.5.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2-20호, 2022.5.10.>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중 [별표 1]의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253-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70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험 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53-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70 GHz)

부 칙<제2023-4호, 2023. 3.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13호, 2023. 06. 30.>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중 [별표 1]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에 “301-5, 60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시험 분야	시험항목
3. 전자파적합성	301-5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
5. 전자파강도	607 무선전력전송기기(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부 칙 <제2023-15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제3조 관련)

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별 기술기준

시험분야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유선	「단말장치기술기준」,「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사항
무선	「무선설비규칙」,「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간이무선국용·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및「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사항
전자파적합성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사항
전자파흡수율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및「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정한 사항
전자파강도	「전자파강도 측정기준」및「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정한 사항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시험분야	시험항목
1. 유선	101 루프스타트 방식의 기기 102 극성반전/타이트링크(2선,4선식)/구역외 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전용회선(링다운, 실선대역내 포함)방식의 기기 103-1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64 kbps 이하) 103-2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2,048 kbps) 103-3 전용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44,736 kbps) 104 꼬임케이블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인터페이스 단말장치 106 <삭제> 106-1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시험분야	시험항목
	106-2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최대채널주파수 폭 96㎒ 제외) 107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08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장치 109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111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112-1 방송공동수신설비류 112-2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제외) 112-3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증폭기시험 제외) 112-4 방송공동수신설비류(제한수신시험, 증폭기시험, 광증폭기시험, 광송신기 및 수신기시험 제외) 113-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113-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제한수신시험 제외) 116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117 기가급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2. 무선	201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 202 무선방위측정기 203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 204 경보자동전화장치 205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 장치)의 무선설비 206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설비 207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3조(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무선설비 208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209-1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209-2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209-3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210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 211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212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213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 수신기 214 네비텍스 수신기 215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시험분야	시험항목
	216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217 자동식별장치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19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221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22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3-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3-3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4-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225-2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225-3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계장치)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7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228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229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23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32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3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34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235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36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18, 26㎓ 대역)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39-1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39-2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39-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40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시험분야	시험항목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4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DFS시험 제외) 245-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17, 19㎓ 및 DFS시험 제외)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247-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247-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76~77㎓ 시험 제외)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2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 ㎓)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 253-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70 ㎓) 254 코드없는 전화기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55-2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255-3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점대점 고정통신용기기)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6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261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263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64-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264-2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76~81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265-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265-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기지국) 265-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중계장치)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이동국)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기지국)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중계장치)

시험분야	시험항목
	267-1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해안국용) 267-2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선박국용) 26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재난경보방송용) 269-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269-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기지국) 269-3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중계장치) 270-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이동국) 270-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기지국) 270-3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중계장치) 271 자율해상무선기기
3. 전자파적합성	301-1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1-2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301-3 <삭제> 301-4 <삭제> 301-5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 302 <삭제> 303-1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03-2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303-3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303-4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및 유도전류 시험 제외) 304-1 KS C 9815(조명기기류) 304-2 <삭제> 305 <삭제> 306 <삭제> 307 KS C 9990(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309 KS X 3141(전력선통신기기류) 310-1 KS C 9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310-2 KS C 9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 시험 제외) 311 KS C IEC 60947-1/KS C IEC 60947-2/KS C IEC 60947-4-1(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시험분야	시험항목
	312 KS C 961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S C 9610-6-4(산업환경) 314 KS C 98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5 <삭제> 316-1 <삭제> 316-2 <삭제> 316-3 <삭제> 316-4 <삭제> 317-1 KN 51(전기철도기기류) 317-2 KN 51(전기철도기기류/펄스자기장시험 제외) 318 KS C IEC 60601-1-2(의료기기류) 319 KS C 9547(조명기기류) 320 KS C 9974-10(아크용접기) 321 KS C 961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S C 9610-6-2(산업환경) 323-1 KS X 3124(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323-2 KS X 3124(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324 KS X 3137(무선호출용 무선설비) 325 KS X 3125(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26 KS X 3127(간이무선국) 327-1 KS X 3128(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327-2 KS X 3128(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 제외) 328-1 <삭제> 328-2 <삭제> 329 KS X 3130(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0 KS X 3131(생활무전기) 331 KS X 3136(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32 KS X 3126(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3-1 KS X 3132(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333-2 KS X 3132(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334 KS X 3139(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335-1 <삭제> 335-2 <삭제> 336 <삭제> 337 KS X 3134(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338 KS X 3138(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 339 KS X 3140(해상항해용 무선설비) 340 KS X 3143(무선전력전송기기) 341-1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시험분야	시험항목
	341-2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342-1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342-2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343 KS C 9800-3(가변속 전력구동기기) 344 KS B 695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5 KS B 6945(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346 KS C 9992(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347 KS C 9994(전기자전거) 348 <삭제> 348-1 KS X 3135(5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48-2 KS X 3135(2G, 3G, 4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48-3 KS X 3135(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49 <삭제> 349-1 KS X 3129(5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349-2 KS X 3129(5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 제외) 349-3 KS X 3129(2G, 3G, 4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349-4 KS X 3129(2G, 3G, 4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 제외) 349-5 KS X 3129(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단말기, 보조기기) 349-6 KS X 3129(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 제외) 350 KN 62920(태양광 발전시스템용 전력변환기) 351 KS C 9995(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
4. 전자파흡수율	501-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이상) 502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503-1 무선호출용 무선설비(100㎒ 대역) 503-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270~470㎒ 대역)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8 900 ㎒대역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509-1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00㎒ 대역) 509-2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6㎓ 대역)

시험분야	시험항목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대역)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512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514 <삭제> 51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150㎒ ~ 5850㎒ 주파수 대역)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 스템용/5㎓ 대역)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 대역) 518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519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52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
5. 전자파강도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604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605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606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607 무선전력전송기기(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별표 2]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검사주기

(제14조 관련)

측 정 설 비 명	검사주기	비 고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자재	1년	
안테나	2년	
전원 안정화 회로망	1년	
흡수 클램프	1년	
전자기 클램프	1년	
결합·감결합 회로망	1년	
전계 프로브	1년	
정전기 발생기	1년	
과도전압/버스트 발생기	1년	
서지 발생기	1년	
전원전압변동장치	1년	

[별표 3]

적합성평가 시험 수수료

(제24조 관련)

1. 무선분야 (구 형식검정)

(단위 : 원)

대 상 기 기			수수료
경보자동수신기			677,500
구명정용휴대무선전신기자재			407,300
선박국용무선방위측정기			349,100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			375,400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446,700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설비의 기자재	송·수신장치		437,300
	송신장치		298,400
	수신장치		255,200
	경보자동전화장치내장 송수신장치		480,500
	경보자동전화장치내장 송신장치		337,800
선박국용 양방향 무선전화장치			442,900
경보자동전화장치			214,000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자재			647,500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자재			626,900
레이다 및 자동레이다 푸롯팅장치			786,400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해상이동업무용 무선국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자재	MF·HF대	송·수신장치	793,900
		송신장치	688,800
		수신장치	688,800
	VHF대	송·수신장치	711,300
		송신장치	647,500
		수신장치	668,100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668,800
네비텍스 수신기			668,100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자재			619,300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자재			688,800
선박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711,300

※ 비 고

1. 레이다와 그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자동레이다프롯팅장치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레이다프롯팅장치의 무선 시험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2. 기종 또는 방식이 2 이상인 다기능 복합무선기자재의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마다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무선분야(구 형식등록)

(단위 : 원)

대 상 기 기		수수료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송수신장치	437,300
	송신장치	302,200
	수신장치	251,500
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자재		289,000
라디오부이의 기자재		619,300
의료용 고주파이용설비의 기자재		135,100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설비의 기자재	송·수신장치	437,300
	송신장치	298,400
	수신장치	255,200
F1D, G1D, F2D, G2D,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	송·수신장치	319,100
	송신장치	305,900
	수신장치	249,600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313,400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900MHz대 무선데이타 통신용 무선설비		302,200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313,400
영 제25조제4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미약전계강도 무선기자재 및 무선조정용 무선기자재		90,100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HF대 기자재	437,300
	VHF/UHF대 기자재 등	319,100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302,200

※ 비 고

1.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와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자재 중 전자파흡수율에 대한 시험이 필요한 경우 4,095,000원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 기종 또는 방식이 2 이상인 다기능 복합무선기자재의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마다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전자파적합성분야

(단위 : 원)

시 험 종 목	수수료
방사성장해시험	298,400
전도성장해시험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	373,000
정전기방전 내성시험	149,200
전기적빠른 과도현상/버스트 내성시험	149,200
서지 내성시험	149,200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	149,200
전원주파수자기장 내성시험	149,200
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내성시험	149,200
펄스자기장	149,200
감쇄진동자기장	149,200

4. 유선분야

가. 전송망기자재류

(단위 : 원)

기 자 재 분 류	수수료
주전송장치	473,900
구내전송증폭기	468,000
분기자재	427,000
분배기	380,100
동축케이블	263,900
직렬단자	263,900
기타(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CATV 기자재류)	263,900

나. 단말장치류

(단위 : 원)

기 자 재 분 류	수수료
전화기	432,800
다기능전화기	432,800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자재	432,800
코드없는 전화기(유선분야)	432,800
코드없는 전화기(무선분야)	396,500
팩시밀리기자재	432,800
영상전화기	432,800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자재	432,800
공중전화기	432,800
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432,800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	263,900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	432,800
팩시밀리 전용 모뎀카드	432,800
근거리 데이타채널 모뎀	263,900
무선모뎀	432,800
신용카드조회 단말기자재	432,800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자재	432,800
PC에 장착된 방송통신 단말기자재	432,800
영상전송기	432,800
다기능 보조기	432,800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기자재	432,800
비상통보기자재	432,800
원격검침용통신기자재	176,000
원격제어기자재	432,800
통신설비 유지보수용 톤신호 송수신 시험기자재	432,800
회선장애 감시기자재	432,800
ISDN망종단기자재	432,800
ISDN단말기자재	432,800
ISDN다기능기자재	432,800
접속커넥터	70,400
디지털가입자회선 단말기자재	432,800
IPTV	432,800
기타(분류되지 않는 단말기자재류)	263,900

다. 시스템류

(단위 : 원)

기 자 재 분 류	수수료
전화교환기	456,300
데이타교환기	456,300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	456,300
구내교환기	456,300
키폰시스템	456,300
키폰과 구내교환기의 혼합시스템	456,300
자동음성처리시스템	456,300
전자사서함시스템	456,300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456,300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263,900
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263,900
응답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	456,300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263,900
기타(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 및 시스템 부속물)	263,900

라. 회선종단장치류

(단위 : 원)

기 자 재 분 류	수수료
전화교환기	456,300
데이타교환기	456,300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	456,300
구내교환기	456,300
키폰시스템	456,300
키폰과 구내교환기의 혼합시스템	456,300
자동음성처리시스템	456,300
전자사서함시템	456,300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456,300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263,900
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263,900
응답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	456,300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263,900
기타(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 및 시스템 부속물)	263,900

5. 전자파강도분야

기 자 재 분 류	수수료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222,480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222,480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222,480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시험분야	[ ] 유선 [ ] 무선 [ ] 전자파적합성 [ ] 전자파흡수율 [ ] 전자파강도	
시험항목		
시 험 장	주 소	규 격 [ ] 야외 [ ] 대용 [ ] 기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3.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4. 국제표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5.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영 제97조의3에 의한 해당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서류심사/현장심사	→	지정여부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210㎜×297㎜[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지 정 서

Certificate of Designation

지정번호*(Designation No.)* : *KR*

기관명*(Name of Laboratory)* :

주소*(Address)* :

지정분야*(Scope of Designation)* :

시험항목*(Items of Tests)* : **별지 참조**

위 기관을 「전파법」 제58조의5의 규정 및 ISO/IEC 17025:2017에 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This Laboratory is accredited and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adio Waves Act and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17025:2017

. . .

국 립 전 파 연 구 원 장 직인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변 경 신 청 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즉시 □ 60일(현장심사의 경우)

신 청 인	기관명(지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1. 추 가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 시험분야	□ 유선 □ 무선 □ 전자파적합성 □ 전자파흡수율 □ 전자파강도	□ 유선 □ 무선 □ 전자파적합성 □ 전자파흡수율 □ 전자파강도
□ 시험항목		

2. 변 경

□ 기관명		
□ 기관대표주소		
□ 대표자		
□ 시험장주소		
□ 시험설비		
□ 시험환경조건		
□ 품질책임자		
□ 기술책임자		
□ 시험원		
□ 품질관리규정		

3. 중지/폐지

구 분	분야/항목	사유	중지기간/폐지일자
□ 중지 □ 폐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수수료
1.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 확보 현황 1부(필요시)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시험분야 추가는 사업계획서 포함)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4.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필요시) 5. 지정서 원본(필요시)	영 제97조의3에 의한 해당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서류심사/현장심사	→	변경지정여부결정	→	지정서 발급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기 관 (국립전파연구원)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양수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양수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양도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양도·양수 내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양도 · 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서류심사/현장심사	→	승인여부결정	→	지정서 발급
신 청 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210㎜×297㎜[일반용지 80g/㎡]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합병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합병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피합병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합 병 내 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병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서류심사/현장심사	→	승인여부결정	→	지정서 발급
신 청 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210㎜×297㎜[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적합성평가시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25일 ☐ 55일

①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신 청 기자재	기자재명 (기기명)			모델명 (형식명)	
	기기부호 (형식기호)			용 도	
제조자	상호(명칭)			제조국	
	주 소				

신청분야	[ ] 유선 [ ] 무선 [ ] 전자파적합성 [ ] 전자파흡수율 [ ] 전자파강도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수수료
제출서류	1. 사용자설명서(방송통신기자재등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될 것) 2. 외관도(제품 전체 외관도) 3.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함. 단, 전자파적합성 시험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제24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직접/온라인)	→	서류검토/신청기자재확인	→	시험	→	시험성적서 발급
신 청 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험을 신청한 경우 작성

②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③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④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⑤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⑥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별지 제7호서식]

표본검사 결과 보고

☐ 표본검사 현황

표본 기간	
표본 비율	
시험 실적	

☐ 표본검사 결과

상호명	기기명	모델명	시험분야	적/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지정시험기관명(대표자)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예시)

시험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목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신청한 시험업무의 범위, 신청기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항목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Ⅰ. 일반현황

1. 법인 소개
2. 법인 연혁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배경 및 전략
2. SWOT 분석
3. 비즈니스(사업) 모델
4. 사업 계획

Ⅲ. 재무구조

1. 재무구조 현황
2. 신용등급 현황
3. 자금조달 계획
4. 예상 매출 및 수익분석